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김길동	750101-*****		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	대출종류	차입금	1월	2월	3월		
취급기관	상품명	고정금리 차입금	4월	5월	6월	연간	소득공제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주택취득일/저당권설정일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7월	8월	9월	연간 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최초차입일/최종상환예정일 (상환기간)	당해년원급 상환액	10월	11월	12월		
	해당없음	25,000,000	0	0	0	442,628	442,628
U 새마을금고 (209-06-29***)	주택자금대출(주택구입자금대출)	0	0	0	0		
	2019-08-30/2019-08-31	25,000,000	0	0	0	442,020	
	2019-08-31/2039-08-31 (20 년)	0	217,826	106,752	118,050		

- 1. 공제 대상: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은 3억원 이하, 2014.1.1.~2018.12.31. 4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※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,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
-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300만원, 500만원, 600만원, 1000만원, 1500만원, 1800만원 한도

일련번호: 20191219-0117137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길동	750101-*****

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		1월	2월	3월	4월	
상품명	사업자번호	5월	6월	7월	8월	상환액계
계좌번호	대출일	9월	10월	11월	12월	
FI새마을금고		35,505,030	86,630	186,860	205,460	
가계전세자금대출	617-19-58***	198,930	205,560	204,090	210,920	37,646,410
9301209187315	2017-12-08	210,930	208,370	215,290	208,340	
HI은행		92,744	92,745	83,769	92,744	
임차(전세)보증금담보대출 ([상호]가계일반자금대출)	109-99-58***	89,752	92,745	89,753	92,745	1,092,011
36102147207900000000	2013-07-04	92,745	101,740	80,777	89,752	
GI은행		101,160	101,160	7,765,630	0	
주택도시기금 저소득가구전세자 금대출(담보/보증대)	109-99-61***	0	0	0	0	7,967,950
1320700705254	2009-11-24	0	0	0	0	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
- ※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(세대주, 세대원) 명의여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%
- ※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91219-0117137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상세내역 [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김길동	750101-*****		

■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		1월	2월	3월	4월	
상품명	사업자번호	5월	6월	7월	8월	상환액계
계좌번호	대출일	9월	10월	11월	12월	
KI 은행		0	0	0	0	
주택자금대출	222-05-33***	0	0	0	85,010	419,570
0786300286121	2019-07-16	85,010	82,270	85,010	82,270	
합 계		47,125,9				47,125,941

- 1. 공제대상자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)인 근로자
- ※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(세대주, 세대원) 명의여야 함
- 2. 공제대상금액: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%
- ※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191219-01171375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